(붙임 2)

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3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- 선박 건조·수리업 및 관련 산업(KSIC 3111 등) 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,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(단, 관광유흥음식점업, 관광극장유흥업,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) - 태양광, 풍력,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(KSIC 35114, 35119 등) - 세라믹신소재 및 도자기관련 산업(KSIC 23221, 23222, 23229 등) - 천일염 관련 산업(KSIC 07220 등) -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 - 해양레저장비 관련 산업(KSIC 3112 등)
A15	기타 지원기업[1]	일반	- 기타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징후지역 소재 업체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음식·숙박업(KSIC 55~56) - 도소매업(KSIC 45~47) - 여행업(KSIC 752) - 운수업(KSIC 49, 51~52) - 여가업(KSIC 90~91) - 해운업(KSIC 501~502)

주: 1)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개 정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4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- 선박 건조·수리업 및 관련 산업(KSIC 3111 등) - 여행업(KSIC 752), 숙박업(KSIC 55)(단, 여관·모텔업, 기타 숙박업(기숙사·고시원 등) 제외(KSIC 55102,5590)) 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,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(단, 관광유흥음식점업, 관광극장유흥업,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) - 태양광, 풍력,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(KSIC 35114, 35119 등) - 세라믹신소재 및 도자기관련 산업(KSIC 23221, 23222, 23229 등) - 천일염 관련 산업(KSIC 07220 등) -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 - 해양레저장비 관련 산업(KSIC 3112 등)
A15	기타 지원기업[1]	일반	- 기타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음식업(KSIC 56) - 여관·모텔업, 기타 숙박업(기숙사·고시원 등)(KSIC 55102, 5590) - 도소매업(KSIC 45~47) - *(여행업 삭제)* - 운수업(KSIC 49, 51~52) - 여가업(KSIC 90~91) - 해운업(KSIC 501~502)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징후지역 소재 업체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
주: 1)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비 고

- 금리 감면폭 및 제출자료의 정확성의 평가비중을 수정

- 여행업과 숙박업에 관련하여 '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, 허가 또는 신고' 조건을 삭제

-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선정기준 삭제(A16으로 이동)

- 기존 숙박업 중 여관·모텔업, 기숙사 및 고시원, 그 외 기타 숙박업만 지원하도록 수정
- 여행업 삭제(A8로 이동)
-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선정기준을 추가